엘리체 PRIME

일곡 엘리체 프라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07.2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당 아파트는 2013.11.2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은「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 해당 아파트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전라남도 지역까지 확대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5항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7.22)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청약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 27851 (2014.07.1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496 외 36 필지
-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21층 9개동 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667대 [아파트 641대(지상,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26대(지상, 지하층)] [일반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5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주택형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특별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공급	해당동	1층 우선배정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4000559-01	74.1967A	74.1967	23.8844	98.0811	35.0740	133.1551	53.4538	191	19	9	19	144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8동	8	2016.07
	2014000559-02	74.1967B	74.1967	23.8844	98.0811	35.0740	133.1551	53.4538	80	8	4	8	60	103동, 106동, 108동	5	
	2014000559-03	74.1361C	74.1361	24.4456	98.5817	35.0455	133.6272	53.4101	17	2	1	2	12	102동	1	
	2014000559-04	84.9613A	84.9613	27.5100	112.4713	40.1627	152.6340	61.2090	163	16	8	16	123	104동, 105동, 107동, 109동	9	
	2014000559-05	84.9426B	84.9426	27.5697	112.5123	40.1539	152.6662	61.1955	75	7	3	7	58	104동, 105동, 107동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층별 구분	공급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 계약 시	계약금 2차 2014.09.11	중도금 1회 2014.10.11	2회 2014.12.11	3회 2015.03.11	4회 2015.08.11	5회 2015.10.11	6회 2015.12.11	잔금(30%) 입주지정일	비고
74.1967A	1층	8	52,447,798	167,552,202	220,000,000	10,000,000	1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66,000,000	
	2층	12	52,447,798	170,552,202	223,000,000	10,000,000	1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66,900,000	
	3층	12	52,447,798	173,552,202	226,000,000	10,000,000	1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7,800,000	
	4층	12	52,447,798	177,552,202	230,000,000	10,000,000	1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000,000	
	5층~최상층	147	52,447,798	182,552,202	235,0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74.1967B	1층	5	52,447,798	167,552,202	220,000,000	10,000,000	1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66,000,000	
	2층	5	52,447,798	170,552,202	223,000,000	10,000,000	1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66,900,000	
	3층	5	52,447,798	173,552,202	226,000,000	10,000,000	1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7,800,000	
	4층	5	52,447,798	177,552,202	230,000,000	10,000,000	1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000,000	
	5층~최상층	60	52,447,798	182,552,202	235,0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74.1361C	1층	1	52,404,919	168,595,081	221,000,000	10,000,000	1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2층	1	52,404,919	171,595,081	224,000,000	10,000,000	1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200,000	
	3층	1	52,404,919	174,595,081	227,000,000	10,000,000	1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68,100,000	
	4층	1	52,404,919	178,595,081	231,000,000	10,000,000	1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300,000	
	5층~최상층	13	52,404,919	183,595,081	236,000,000	10,000,000	1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0,800,000	
84.9613A	1층	9	60,057,020	193,942,980	255,000,000	10,000,000	1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76,500,000	
	2층	11	60,057,020	196,942,980	258,000,000	10,000,000	1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7,400,000	
	3층	11	60,057,020	199,942,980	261,000,000	10,000,000	1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78,300,000	
	4층	11	60,057,020	204,942,980	266,000,000	10,000,000	1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79,800,000	
	5층~최상층	121	60,057,020	210,942,980	272,000,000	10,000,000	1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81,600,000	
84.9426B	1층	2	60,043,773	193,956,227	255,000,000	10,000,000	1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76,500,000	
	2층	5	60,043,773	196,956,227	258,000,000	10,000,000	1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7,400,000	
	3층	5	60,043,773	199,956,227	261,000,000	10,000,000	1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26,100,000	78,300,000	
	4층	5	60,043,773	204,956,227	266,000,000	10,000,000	1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26,600,000	79,800,000	
	5층~최상층	58	60,043,773	210,956,227	272,000,000	10,000,000	1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81,6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주택형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과 세대당 대지지분의 합계 지분차이(0.0190㎡)는 101동 201호에 가산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잔여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한도내에서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행사·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5%의 할인율(선납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특별(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특별공급은 청약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가입요건 등 일부항목 제외 배제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형별로 아래와 같은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 특별공급 신청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6호) 제7조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광주광역시)	일반 시·군 지역(전라남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 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7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1. 사업주체가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접수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 이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첨 사유가 제외되는 경우 1회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이외)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대상세대	74.1967A	74.1967B	74.1361C	84.9613A	84.9426B
일반특별공급	52	19	8	2	16	7
다자녀 특별공급	25	9	4	1	8	3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19	8	2	16	7
계	129	47	20	5	40	17

■ 일반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철거주택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 중소기업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장애인 : 광주시청 전남도청, 군인 : 국방부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52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74.1967A	74.1967B	74.1361C	84.9613A	84.9426B
일반특별공급	52	19	8	2	16	7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대상세대 : 25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74.1967A	74.1967B	74.1361C	84.9613A	84.9426B
다자녀 특별공급	25	9	4	1	8	3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013-935호'에 의거하여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광주광역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정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자녀수(1)	5	미성년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자녀수(2)	10	자녀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세대주가「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7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광주광역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당첨자선정방법에 의하며, 이로도 경쟁이 있을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급 관련 제출된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단,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606,216원 이하	5,102,802원 이하	5,357,44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527,459원 이하	6,123,362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357,446원) + {1인당 평균소득(399,140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세대 : 52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74.1967A	74.1967B	74.1361C	84.9613A	84.9426B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19	8	2	16	7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한 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 통	– 1,2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 본 주택에 청약관련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 9.25)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광주광역시)	일반 시·군 지역(전라남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가점제 적용 입주자선정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순위	공통	• 접수대상 없음	
	3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분	내 용
일반 기준	1) 가점제 점수는 '가점 산정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 산정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30세미만 미혼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점항목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구 분	내 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에 한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1, 2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 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4.08.06) 이후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불장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됨.
- 구비서류(은행창구 접수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 청 장 소	비고
특별공급	기타	일반(국가유공자 등)	• 2014.07.28.(월)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광주 일곡 엘리체 프라임 견본주택	
		다자녀/신혼부부				
일반공급		1,2순위	• 2014.07.29(화)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3순위	• 2014.07.30(수)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보유자(www.apt2you.com)	

※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3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접수가능)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택공급 신청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분에 한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3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2013년도 휴직기간이있는 경우 : 2013년도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2013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2013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3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기타	일반(국가유공자 등)	• 일시 : 2014.07.28.(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4.08.05.(화)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 일시 – 2014.08.11.(월)~2014.08.13.(수)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다자녀/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4.08.05.(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2순위				
		3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유선상의 착오가능성 때문에 전화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4.08.05.(화) ~ 2014.08.14.(목)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4.08.05.(화)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광주 일곡 엘리체 프라임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일반공급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최초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Ⅴ 계약체결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비고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당해지역 우선공급대상자)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대리계약시(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자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명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음(2012. 09. 25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계약금, 중도금	137-107-201925	에스이앤씨 (유) (외1,대한주택보)

- 당 현장은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주택사업보증 및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으며, 이에 본 아파트의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수납을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추후 주택사업보증의 해지로 인한 분양대금 관리계좌가 사업주체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내 및 통보를 할 예정임.)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한주택보증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대출 알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하여야 함. 또한 상기 사유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까지의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행사·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16년 07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Ⅵ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0%) 아파트 중도금 5회차시	잔금 (80%) 입주지정일
74.1967A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74.1967B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74.1361C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84.9613A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84.9426B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발코니 확장대금	137-107-201800	에스이앤씨(유)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공급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산정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시 제품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선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38조 제1호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공급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계약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마이너스 옵션계약체결,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해 기본선택품목의 선택여부에 대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1) 창호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손잡이철물, 경첩외 하드웨어일체), 실외기, 디지털도어락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 내장, 현관방화문
2) 바닥재	[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 [타일, 석재] 현관, 발코니바닥	바닥 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3) 벽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시트지, MDF판),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 걸레받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건식벽체 / 발코니벽체도장
4) 천정	초배지, 천정지, 반자돌림(몰딩포함), 우물천장(몰딩포함)	천정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발코니천정도장
5) 조명기구	각실 조명기구 일체 (욕실 포함)	전기배관, 전기배선(콘센트, 스위치), 매입박스
6) 욕실	(위생기구)비데, 양변기, 세면대,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욕실타일, 천장재(천장틀, 배기팬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거울, 욕실장, 수납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7)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 (하부장 상판, 주방가전, 액세서리 일체 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 TV폰, 주방수전류, 싱크볼, 주방후드, 쿡탑등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 배선기구만 미설치) 단열문, 주방 배기덕트
8) 가구류 및 기타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 시스템장),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74.1967A	74.1967B	74.1361C	84.9613A	84.9426B
광주 일곡 엘리체 프라임	20,714,000	20,714,000	20,820,000	23,770,000	23,762,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마이너스 옵션금액)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타일 및 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Ⅶ 기 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인장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및 3순위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단지시설관련 유의사항

1. 시공 및 변경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른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형태·색채·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구성되며, 각 동과의 연결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입면 몰딩설치에 따라 일부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거(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2. 소음 및 사생활권침해 불편 우려사항
- 본 아파트는 국제고등학교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인접한 사업지로서, 학교 방송이나 행사(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등)로 인한 소음과 교통 장애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차량의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법적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과 보행자에 의한 소음, 사생활침해 등으로 거주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3.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인접부 도로시설 또는 주변 시설물과 단지내 고저차로 인해 일부 지하 외벽 또는 옹벽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층을 통해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저층부세대는 설치된 단지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105동과 108동 앞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주·부출입구 옆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세대(101동, 102동, 103동, 104동)는 상가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음.
- 단지와 대지주변(도로 및 공원, 국제고등학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타 대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채광,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 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향후 인허가관청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현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발코니에는 배수 등을 위한 드레인, 선홈통 및 냉온수전 등이 설치되며 실제 시공시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세부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고,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카다로그 및 홍보인쇄물 관련 유의사항
-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 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 프레임 두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설비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음)
11.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②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5.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헤이 노출될 수 있음.
16. 본 공사시 계량기, 세대통합 통신단자함과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정에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17.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대피공간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18.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19.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21.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22.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3.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배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24.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25.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구성됨.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4.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5.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캐노피 설치로 인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6.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7.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DA, TOP-LIGHT, 계단실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 될 수 있음.
8.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단지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마감재, 측벽그래픽 등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3.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4.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5.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조성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7. 분양시 홍보물의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디자인, 주동형태, 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등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10. 인허가기관의 계획에 의해 추후 인허가변경에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할 경우, 이로 인한 건축물 외관이 변경될 수 있음.
11.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1~3층)은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상부층과 필로티 내부는 도장으로 마감되며, 3층의 몰딩은 EPS몰딩으로 시공됨.
12. 단지내 레벨차로 인한 사면구간 형성으로,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13. 각종 인증절차에 따라 단지 구조물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14.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6. 부대복리시설 중 경비실(주출입구 1개소), 경로당, 어린이집은 지상에 설치됨, (부출입구 경비실은 지하주차장입구에 설치됨)
7.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8.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보육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9.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장애인관련 법규 및 각종 인증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자료에 표현된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제작과정에서의 오탈자로 인해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공간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 및 가전제품의 이동 및 설치가 어려운 발코니 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녹색건축인증(또는 주택성능등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주택 등 각종 인증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이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외 법면구간은 대지지분에서 제외됨니다.
- 본 아파트는 한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인하여 대지 북측 경계를 지나서 송전선로가 지중매설되고, 단지 외 접하는 구간은 약 300m이며 매설깊이는 1~3m입니다. 그리고 해당구간 상부에 건물 구조물 등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지중화 되는 송전전압은 154kv이고 관계기관과 협의후 철탑이 이동 설치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포함)를 사업주체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시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초등학생 수용 검토 결과 삼각초등학교의 해당 학구로, 공동 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은 동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수용이 가능함.
- 중학생은 제5학교군 수용 검토 결과, 현 수용 시설 범위 내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함.
- 고등학생은 단일 학교군으로 학교군 내 수용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수용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1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 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고효율 기자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 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절수기기	적 용

■ 소음예측 측정기관 및 측정결과

■ 평가기관 : 선일기술산업㈜ (등록번호 : 제금천–1호, 제금천–2호)

■ 측정결과
1. 본 주택에 인접한 35M도로(설죽로) 및 10M도로(학교진입도로)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6층 이상 세대의 공동주택 실내소음도 기준 45dB(A)이하를 만족함.
2. 본 주택에 인접한 35M도로(설죽로) 및 10M도로(학교진입도로)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10M도로(학교진입도로)에 면한 예측지점에서는 실외소음도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35M도로(설죽로)에 면한 일부 예측지점에서는 실외소음도기준「65dB(A)미만」을 초과하므로, 부지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만족하기로 함.

■ 결과요약
1. 단지내 세대별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102동 1라인 7층 침실1, 106동 1라인 12층 침실1, 107동 10층 침실1에서 최대 실내소음도 40dB(A)로 나타남.
2. 단지내 세대별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5층이하 세대는 103동 5층에서 주간소음도 62.9dB(A), 야간소음도 59.9dB(A)로 나타남. (방음벽 설치시 소음예측결과)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안의 도로,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 시설 등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정보통신 관련하여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인증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감 리 회 사	(주)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유)이에프	(주)우진엔지니어링
감리금액(원)	928,610,000	346,244,817	79,200,000	4,400,000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주요내용

보 증 기 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91,750,400,000	제 05612014–101–0006200 호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5조 제4호)
- 보증사고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및 시 공 사
시행사	상 호	에스이앤씨(유)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73번길 17
	등록번호	409–86–19184
시공사	상 호	㈜ 서진종합건설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108 일로빌딩 5층
	등록번호	135–81–16336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ilgok-eliche.co.kr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73–15번지 / 분양문의 062) 573–440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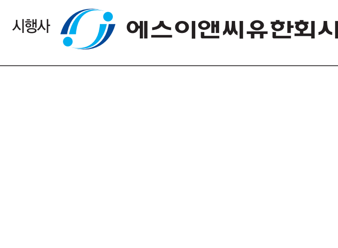

062)573-4404

총526세대 74㎡ 288세대 84㎡ 238세대 [전용면적 기준]

시행사 에스이앤씨유한회사 시공사 (주)서진종합건설